

전자기록환경에서의 아키비스트 윤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thics for Archivists in the Electronic Records Environment

신 은 영(Eun-Young Shin)*

목 차

- | | |
|-----------------------------|-----------------------------------|
| 1. 서 론 | 4. 전자기록환경에서의 아키비스트 윤리
규정 모델 제안 |
| 2. 이론적 배경 | 4.1 윤리규정 전문에 대한 제안 |
| 2.1 전문적으로서 아키비스트 | 4.2 기록정보 관리에 관한 윤리규정 제안 |
| 2.2 전문적 윤리 | 4.3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윤리규정 제안 |
| 2.3 전자기록환경에서의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 4.4 전문직 실천 및 조직에 관한 윤리규정
제안 |
| 3. 주요국가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 5. 결 론 |
| 3.1 분석대상 | |
| 3.2 윤리규정 구조비교 | |

<초 록>

세계 각국의 아키비스트 협회 및 전문가 단체에서는 전문직적 기준과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발표하고, 그 윤리규정을 통하여 실천적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아키비스트 협회에서 채택한 윤리규정을 비교하여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추출하고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A(미국), SA(영국), ACA(캐나다), ASA(호주), ICA(국제기구) 5개 아키비스트 협회를 선정하였다.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크게 기록정보관리, 기록정보서비스, 전문직 실천과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필수요소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전자기록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도 함께 고찰하였다.

주제어: 윤리규정, 아키비스트 윤리, 전자기록, 아키비스트협회

<ABSTRACT>

Associations of archivists and professional communities all over the world have released criteria and code of ethics which provide solutions of ethical problems in practical uses to make their professional positions to be kept.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me of existing codes of ethics established by association of archivists and suggest model of ethic codes for archivists with essential aspects. Selected associations of archivists are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SA(Society of Archivists), ACA(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ASA(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Five codes of ethic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nd comparison from these associations and compared with ethics for achival management,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and professional activities. This study consider essential aspects in the electronic records environment.

Keywords: Code of ethics, Associations of archivists, Electronic records

*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료과 정립전문원(seylib@hanmail.net)

1. 서론

윤리적 문제는 인간의 삶 속에서 언제나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윤리적 결정의 결과가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혹은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더 신중하게 해야만 한다. 더욱이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 윤리적 결정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게 된다.

전문직으로서 아키비스트는 생산된 기록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록의 생명주기에 개입하여 기록유산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다. 아키비스트는 이러한 창조적 활동을 위해 주체적인 윤리를 확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갈수록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속에서 윤리적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규정을 따라 윤리적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 결정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세계 각국의 협회 및 전문직 단체에서는 전문직의 기준과 윤리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외국의 기록관리학계에서도 전문직으로서 아키비스트에 대한 역할을 조명하고 아키비스트의 윤리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아키비스트로 하여금 명시된 기본적인 윤리개념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아키비스트 윤리는 전문직으로서 기록관리적 본연의 임무와 위치를 정립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되며 아키비스트의 임무를 실행하는 동안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행동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기록관리 분야가 더 발전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윤리규정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외국에서 활발한 활동 중인 아키비스트 협회를 선정하여 이들 협회에서 제정한 윤리규정을 크게 기록정보관리, 기록정보서비스, 전문직실천과 조직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윤리 내용요소를 필수요소로 보고 이를 추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록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 관리가 전자기록환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키비스트의 윤리규정은 한번 제정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계속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곧 아키비스트의 윤리규정은 기록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전자기록환경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앞으로도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가운데 그리고 윤리규정을 실천하는 중에도 아키비스트는 기록환경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윤리규정 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협회에서 추출한 윤리규정의 구성에서 꼭 필요한 필수요소를 제안하면서 전자기록환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제안을 통하여 본 연구는 아키비스트 윤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제정을 위한 연구와 논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전문직으로서 아키비스트

2.1.1 전문직의 개념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명확한 의미를 정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전문직으로서의 아키비스트의 윤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직은 현대사회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옛날부터 승려, 제사장 등 종교적 기능을 전담하는 전문인들이 있었고, 그 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돕는 전문직 관료들과 학자들이 나타났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사한 농업이나 목축업과는 달리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전문업자들이 생겨났다(손봉호 2002). 우리사회에 수많은 직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문직이라고 분류되는 직종은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거쳐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를 획득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는 직업으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순자 1992).

전문직의 개념은 전문직에 대한 관점과 연구의 초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구조기능론적 접근, 과정론적 접근, 권력론적 접근이 있다. 구조기능론적 접근은 기능론적 입장에서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구분 짓는 특성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고, 과정론적 접근은 비전문직이 전문직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권력론적 접근은 갈등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비전문직이 전문직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 세 가지의 접근법들은 분석의 초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서로 배타적이기보다는 동일한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조기능론적 접근에서 전문직의 속성으로 생각하는 전문지식, 이타주의나 사회봉사성, 윤리강령은 권력주의적 접근에서 전문직이 권력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독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일반대중과 국가 등을 설득하는데 필수적이다. 구조기능론자들과 과정론자들이 전문직의 한가지 속성이나 전문직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본 전문직 단체도 권력론적 접근에서는 전문직화를 추진해가는 행위의 주체로 파악된다. 또한 구조기능론적 입장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자격과 면허제도는 권력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대상이 된다. 세가지 이론을 종합해서 전문직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전문적 지식과 기술, 사회봉사, 독점권, 면허와 자격기준, 전문직 단체, 자율성, 윤리강령과 자기규율로 요약할 수 있다(권용진 2004; 명대정 2000).

2.1.2 아키비스트의 전문성

아키비스트는 보존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의 수집과 정리, 보존, 이용 등의 관련 활동을 통해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와 사회와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직의 경영관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직업인이다(김상호 1999). 미국에

서는 19세기말 전문역사연구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사료의 관리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는 기록을 다루는 전문직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1884년 미국역사학회(AHA: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가 설립되고 AHA산하에 공공기록위원회(Public Archives Commission)가 구성되어 단지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의 역사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록관리를 장려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909년에는 AHA산하에 아키비스트협회(Conference of Archivists)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후에는 이 협의회가 기록관리 전문직의 활동 중심지가 되었다. 이 협회는 AHA대회를 기하여 모임을 매년 지속하였지만 그들만의 별도 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보다 명확하게 전문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전문직으로서의 이해관계가 분화되어 갔다. 그리고 1936년 미국아키비스트협회(SAA)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등장한 전산시스템에 의해 기록관간의 협력이 쉬워졌고 각 소장 기록물과 그 처리절차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는 일이 진척되었다. 이런 시스템은 유사한 기록물의 수집, 평가, 조직,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키비스트에게도 유용한 것이었다. 아키비스트간의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아키비스트가 다른 기록전문직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한 명백해진다. 아키비스트는 자기 일의 전문성을 알고 기록보존소의 유용성을 전사회적 차원에서 입증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O'toole 1990).

2.2 전문직 윤리

2.2.1 전문직 윤리의 의의

전문직은 사회기능에 없어서는 안 될 직업적 봉사를 하고, 업무상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정한 봉사를 수행하도록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전문직은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신 전문직에의 입문을 규제하고, 높은 행위의 기준 즉, 윤리규정을 수립하여 그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자율적 규제가 가능해야 한다(Degeorge 1990). 법률과 전문직 윤리의 주요 차이점은 법률은 국가 등 외부단체에 의해 강요되는 것임에 반해 윤리는 전문직 내부에서 자체의 자율적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직의 독점적인 지식과 기술이 비윤리적으로 오용된다면, 그것은 공공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전문직의 존재목적에 위배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일 자율적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문직의 비행이나 비윤리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전문직의 공신력이 손상됨은 물론 법적 규제를 초래하여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 개인과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적 규제는 자율성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식이 된다(임희섭 1981).

전문직 윤리는 일종의 규범체계이다. 즉 전문직의 직업활동과 관련되어 전문직이 수행해야 할 행위를 말한다. 전문직 윤리규정은 크게 의무사항과 허용사항으로 나뉜다. 전문직 윤리에서 주요 관심사는 의무사항에 관한 것으로, 의무사항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혜선 1994).

첫째, 전문직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속성과 피해야 할 속성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바람직한 속성은 업무수행능력(competence), 충실성(loyalty), 신중성(discretion), 정직(honesty), 근면(diligent), 공정성(candor) 등이다. 기준의 예를 들면, “전문직은 정직해야 한다”가 될 것이다. 기준만으로는 윤리규범을 구성할 수 없다.

둘째, 책임을 규정한 원리이다. 책임에는 요구되는 행동이 상술되지 않으므로 전문직에게 판단의 여지를 남겨놓는다. 예를 들어 “아키비스트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아키비스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대안 중 균형을 맞추어 선택을 해야 하므로 광범위한 윤리적 문제가 나타난다.

셋째,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을 업무 처리중에 알게 된 경우 정보에 대한 폭로와 사용을 금지한다”와 같이 특정 행동에 대해 상술한 절대적 임무를 규정한 규칙으로 전문직에게 판단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윤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범을 다루지만 법률이나 도덕과 달리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그르지만 한 것은 없다. 어떤 상황 하에서는 무엇이 윤리적인 것인지 혹은 비윤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입장이 양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유용한 절대적 윤리규범은 있을 수 없다.

2.2.2 전문직과 윤리규정

전문직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은 전문직협회에서 제정한 윤리규정에서 표명된다. 윤리규정은 전문직의 의무, 책임을 정리하여 일

련의 규칙형태로 만든 단순, 간결한 규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공통적 지침들을 모아 작성한 것이다. 윤리규정은 윤리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고, 해당 전문직의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개정된다(김혜선 1994).

윤리규정들은 그 직업의 본질, 봉사대상에 대한 임무와 업무 수행방식, 개인적 이익배제, 전문직으로서의 자기개발, 품위유지, 그리고 상호협력, 사회나 국가에 대한 임무를 10개 조항 이내로 간결, 단순,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다. 전문직 윤리규정은 해당 전문직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대중을 위해 존재한다. 우선, 윤리규정은 그 직업내에서 옳거나 혹은 그른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의 종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전문직 구성원간에 일관된 윤리적 행동기반이 되며, 업무수행시 개인의 판단력으로 확실하게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 지침이나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때로는 비윤리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고용주와 전문직의 관계에서 전문직을 보호한다.

전문직 윤리규정은 전문직 자체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대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Usherwood는 윤리규정 채택의 주요한 이유를 대중 보호로 보았다(Usherwood 1981). 전문직이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수행되면 이용자와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이를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많은 전문직 협회는 일반대중에게 그들의 윤리기준과 업무의 세

부사항을 규제한 선언문을 배포하여 일반대중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서비스의 질을 알리는 동시에 보호의 수단을 제공한다.

2.3 전자기록환경에서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2.3.1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우리전통시대의 사관정신에 따르면, 사초를 만드는 사관은 임기가 끝나면 스스로 후임을 천거하면서 “자절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천거한다면 본인은 하늘의 벌을 받아 즉사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선서함으로써 역사를 두려워하고,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전통을 만들어갔다. 이러한 사관정신은 현대적 의미에서 아키비스트의 직업윤리인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곽건홍 2003).

아키비스트 윤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전문직으로서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위치를 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사명감과 헌신성을 갖춘 기록관리 주체의 형성도 아키비스트 윤리의 공유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다. 아키비스트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제와 함께 아키비스트 윤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모든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록정보를 관리하고 공공에 이용시키는 아키비스트의 책무는 윤리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시켰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여러 매체의 기록정보가 급증하게 되고, 기록에 대한 이용자의 알 권리가 신장되며, 기록에의 접근 채널 또한 다양해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최근에 크게 대두

되는 것은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고무하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하는 문제들이다. 아키비스트에게 있어서는 기록정보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전통적인 개념 외에 이러한 정보접근에의 문제들로 인하여 윤리규정의 제정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의 중개자인 동시에 그 자신이 연구자적 특성도 지니고 있는 아키비스트에 있어서는 기록독점과 같은 문제에서 행동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3.2 전자기록환경으로의 변화와 아키비스트 윤리

윤리규정에 관한 연구에서 기록환경을 논하는 이유는 윤리규정이 아키비스트의 직무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실제 기록정보관리에 관련된 윤리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의 특성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일정한 활동의 결과로서 생산된 것이며, 그것이 보존되는 이유는 당장의 목적에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기록이 지닌 물리적 형식은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에서의 중요함이다. 아키비스트는 이러한 기록의 보호라는 역할을 공통으로 분담하고 있다. 아키비스트는 개별 기록이나 기록군 중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고, 그것을 체계적이며 조직한 후 이용자들이 그 기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시간과 재능을 투여한다. 아키비스트가 이러한 일을 완수하려면 자신이 다루어야 할 기록물들과 그것들을 처리할 적절한 절차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O'toole 1990).

기록환경이 종이시대에서 전자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일 것이다. 기록관리 종사자들은 각 분야나 각 나라별로 또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전자기록환경에 대한 대처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기록환경이란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비롯된 기록정보의 생산·유통·활용·관리상의 변화와 함께 그러한 변화의 결과이면서 요인이기도 한 사회·문화적 변동의 상호작용 전반을 의미한다. 전자기록환경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의 지원 없이는 생산은 물론 기록정보를 조직하고, 읽고, 전달하고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대개 종이기록시대의 생산, 검색도구개발, 물리적 배열을 위한 설비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전자환경에서는 비용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록과 관련된 다양한 인간의 지적 작용들을 기록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에 구현하기 위해 보다 계획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록전문직은 전자환경에서 일정하게 변동될 기록관리 체계의 기본골격 및 그 구성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승억 2002).

아키비스트의 윤리규정은 한 번 제정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계속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Dingwall 2004). 이는 곧 아키비스트의 윤리규정이 기록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기록환경의 변화와 함께 윤리규정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 변화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아키비스트는 기록환경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윤리규정 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주요국가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3.1 분석대상

전문직의 윤리규정은 전문직협회를 통해서 제정되고 있으며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또한 아키비스트 협회를 통해서 채택되고 있다.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비교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아키비스트 협회 5 곳을 선정하여 이들 협회에서 채택한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였다. 선정된 협회는 미국의 SAA, 캐나다의 ACA, 호주

의 ASA, 영국의 SA, 국제기구인 ICA이다. SAA¹⁾는 1976년에 윤리규정 작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창설하고 1980년에 윤리규정을 처음으로 채택하게 된다(Benedict 1988). 이후 1992년에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2005년에 한 번 더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개정된 내용을 비교분석에 사용하였다.

ACA²⁾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1)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AA)는 미국의 아키비스트 협회로 1936년 12월에 창설되었다. 1938년에는 「The American Archivist」 학술지를 발행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SAA는 운영되어졌으며, 전쟁이 끝난후에는 국내외 기록관들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ICA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SAA는 북미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협회이다(최정태, 「기록학개론」, 2001, 서울: 아세아문화사, pp.461-464.).

2) Association of Canada Archivists(ACA)는 캐나다의 아키비스트 협회로 1975년에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1978년 CHA(Archives Section of the Canadian Historical Association)와 통합하였다(최정태, 2001, 「기록학개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pp.474-479.).

회원들로부터 일상 업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접수받아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³⁾ ACA에서 1999년에 채택한 윤리규정(Code of Ethics)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ASA⁴⁾는 협회를 통해서 1993년 윤리규정(Code of Ethics)을 발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993년도 윤리규정을 사용하였다.

SA⁵⁾는 1994년 행동규정(Code of Conduct)을 채택하였다. 이 행동규정은 협회회원인 아키비스트에게 기대되는 전문직 행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윤리규정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대표 아키비스트 협회라 할 수 있는 SA의 Code of Conduct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협회로는 ICA⁶⁾를 선정하였다. ICA는 1996년 9월 6일 ICA 제13차 북경총회에서 윤리규정(Code of Ethics)을 채택하였다. 이때 발표된 ICA의 윤리규정은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서조차 사용하고 있다.⁷⁾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비교분석대상으로 선

정된 5개 협회의 윤리규정을 살펴보았다.

3.2 윤리규정 구조비교

각 협회의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함에 있어서 먼저 윤리규정의 전체적인 구조와 명칭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윤리규정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협회 윤리규정의 구조를 표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명칭은 ICA, SAA, ACA, ASA에서는 “Code of Ethics” 즉 윤리규정이라 사용하고 있고, SA에서는 “Code of Conduct” 즉 행동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구조를 살펴보면 ICA의 윤리규정⁸⁾은 전문을 6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본문규정은 크게 10가지 사항으로 나뉘는데 그 내용은 기록의 무결성 보호, 기록을 역사적·법률적·행정적 맥락에서 평가, 선정, 보존하고, 출처보존의 원칙을 따르며, 진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항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들, 기록물 처리 행위시

3) <http://archivists.ca/about/ethics.aspx>

4)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ASA)는 1975년에 결성된 호주의 아키비스트 협회로 증가하는 기록전문가 및 아카이브스 기술의 수요에 힘입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최정태, 2001, 「기록학개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pp.479-480.).

5) Society of Archivists(SA)는 1947년 “Society of Local Archivists”로 결성되었으나, 회원들이 지역중심에서 중앙 및 전국적인 규모로 범위가 늘어나자 1954년에 “Society of Archivists”로 개명하였다. 이후 계속 번창하여 이제는 conservator, archivists, record manager 전문단체로 인정받고 있다(최정태, 2001, 「기록학개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p.471.).

6)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ICA)는 1946년 미국 기록보존가(conservator)의 영향으로 ICOM(International Council for museum)과 비슷한 성격의 국제적 모임의 필요성이 제안되어 Dr. Buck의 노력으로 창설되었다. ICA는 세계의 기록물유산을 보존하고 개발하며 이용하기 위해 1948년에 결성된 전문적이고 세계적인 비정부기구로서 본부는 파리에 두고 있으며 전 세계의 Archives와 Archivists의 관심사를 대변하고 있다(최정태, 2001, 「기록학개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pp.491-495.).

7) http://www.archives.go.kr/cusHelp.do?depth1_code=1&depth2_code=8&depth3_code=3

8) <http://www.ica.org>

〈표 1〉 각 협회 윤리규정의 명칭과 구조

ICA	미국(SAA)	캐나다(ACA)	호주(ASA)	영국(SA)
Code of Ethics	Code of Ethics	Code of Ethics	Code of Ethics	Code of Conduct
◎ 전문(introduction) A-F까지 6가지 ◎ 규정의 내용(code) 1. 무결성 보호 2. 역사적, 법률적, 행정적 맥락에서 평가, 선정, 보존/출처의 원칙 존중 3. 진본성 보호 4.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제공에 노력 5. 기록물 처리행위시 문서화 6. 기록물을 최대한 이용 7. 이용권과 프라이버시 존중 8. 부당한 이익금지 9. 전문성 추구 10. 타직종 전문가와 협력	◎ 전문(Preamble) ◎ 규정의 내용 I. 목적 II. 전문가 관계 III. 판단력 IV. 신의 V. 진본성과 무결성 VI. 접근(access) VII. 프라이버시 VIII. 보호/보안 IX. 법	◎ 원칙(Principle) 1. 이용을 위해 평가 선정 수집, 보존 2. 차별없이 활동 3. 이용, 프라이버시 존중 4. 원칙에 따라 수행 5. 전문성 추구 6. 지식과 경험을 사회이 익위해 사용 ◎ 원칙의 적용 A. 평가, 선정, 수집 (1-4) B. 보존(1-2) C. 이용(1-5) D. 전문가 활동(1-2) E. 지식의 발전(1-2)	◎ 전문(Preamble) ◎ 규정의 내용 1. 법적책임 1.1. 정보관련 법 2. 전문적 책임과 활동 2.1. 추천, 권유 2.2. 비판, 불평 2.3. 명예를 훼손 2.4. 허위진술 2.5. 지식의 발전 3. 전문적인 책임과 기록 3.1. 수집, 이관 3.2. 평가 3.3. 처분 3.4. 보존 3.5. 자료의 무결성 3.6. 접근 3.7. 기밀성, 프라이버시	◎ 전문(introduction) ◎ 목적 ◎ 일반적인 안내 ◎ 기준요건 ◎ 행동규정 1. 협회의 목적에 맞게 활동 2. 부정행위 금지 3. 전문성 추구 4. 협회에서 차별금지 5. 성실성에 위배되는 행동 자체 6. 공평한 서비스제공 7. 부당이익 금지 8. 무결성 유지 9. 동료와의 충돌을 피하고 상호존중 10. 권리 없는 회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협회에 돌리지 말 것

문서화, 기록물을 최대한 공개 활용해야 함과 이용권과 프라이버시의 존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 연구결과와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 등에 관해서 설명한다.

SAA(미국)의 윤리규정⁹⁾도 전문과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뉘는데 전문에서는 이 규정의 역할과 용어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9조항으로 나누어 목적, 전문가관계, 판단력, 신의, 진본성과 무결성, 접근, 프라이버시, 보안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ACA(캐나다)의 윤리규정¹⁰⁾은 크게 원칙과 원칙에 관한 적용사항으로 나뉘어 진다. 원칙부분에서는 아키비스트가 지켜야 할 사항을 6조항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원칙의 적용부분

에서는 A-E의 5부분으로 나누어 A(평가, 선정, 수집)은 4개 조항, B(보존)은 2개 조항, C(이용)은 5개의 조항, D(전문가활동)은 2개 조항, E(지식의 발전)은 2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ASA(호주)의 윤리규정¹¹⁾은 전문과 구체적 내용으로 나뉘는데, 전문에서는 아키비스트의 활동내용과 윤리규정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크게 법적책임, 전문적 책임과 활동, 전문적인 책임과 기록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법적책임은 1개 조항, 전문적인 책임과 활동 부분에서는 임용, 추천, 보수, 비판, 명예훼손, 허위진술, 지식의 발전에 관한 내용

9) http://www.archivists.org/governance/handbook/app_ethics.asp
 10) <http://archivists.ca/about/ethics.aspx>
 11) <http://www.archivists.org.au/about/ethics.html>

을 13개 조항에 걸쳐 다루며, 전문적인 책임과 기록부분에서는 수집, 이관, 평가, 처분, 보존, 기록의 무결성, 접근,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을 21개 조항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SA(영국)의 행동규정¹²⁾은 전문과 목적,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기준요건을 제시한 후에 구체적인 행동규정을 10가지 조항으로 밝히고 있다. 10가지 조항은 아키비스트가 협회의 목적에 맞게 활동할 것, 부정행위 금지, 전문성 추구, 차별금지, 성실성에 위배되는 행동자제, 공평한 서비스 제공, 부당이익 금지, 기록의 무결성 유지, 동료와 충돌을 피하고 협력해야 한다 사항들이다.

5개 윤리규정은 그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전문 등을 통해 윤리규정의 역할이나 용어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인 윤리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전자기록환경에서의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모델 제안

아키비스트의 윤리규정은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것은 상이하나, 개념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기록보존소는 모든 국가에서 기록정보를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장에서는 5개의 협회 윤리규정의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필수요소를 추출하여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구성할 때 꼭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았다. 아키비스트의 윤리규정은 기록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전자기록환경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앞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전자기록환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고찰하여 윤리규정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윤리규정 전문에 대한 제안

5개 협회 가운데 ICA, SAA(미국), ASA(호주), SA(영국) 4개 협회 윤리규정의 구조는 크게 전문과 구체적인 윤리조항을 명시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윤리규정의 세부사항을 기술하기 이전에 윤리규정의 역할과 목적 등 아키비스트의 윤리규정의 성격을 전문을 통해서 밝히고 그 다음에 세부윤리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윤리규정을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협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문의 내용을 추출하여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구성할 때 전문에서 필요한 핵심요소를 정리해보면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문에서는 윤리규정을 제정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윤리규정의 실행과 윤리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Bekker는 현대사회의 전문직 윤리강령의 일반적 특징은 문장이 간결하고 일관성이 있게 단순명료하며, 누구에게나 납득이 되는 실용성과 강제성을 가지며, 내용이 포괄적이며 표현이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윤리규정이 외부지향적이어야 함을 주장했는데, 이는

12) <http://www.archives.org.uk/membership.html>

〈표 2〉 윤리규정 전문 구성에 필요한 필수요소

구분	전문에서 필요한 필수내용요소
목적	윤리규정은 아키비스트를 위한 행위의 표준을 정립 신입들에게는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제시해주고, 기존의 아키비스트들에게는 직업적 책무를 상기시키는 역할 윤리규정을 통해 아키비스트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고취
용어정의	윤리규정의 이해에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
실행	실행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비윤리적 행위시에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 있음
적용범위	윤리규정은 아키비스트들에게 윤리적 규범들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어떤 특정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님

윤리규정이 전문직 내부의 권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사회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고객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Bekker 1976).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목적은 아키비스트를 위한 행위의 표준을 정립하여, 신입 아키비스트들에게는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제시해주고, 기존의 아키비스트들에게는 직업적 책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여 윤리규정을 통해 아키비스트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전문에서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아키비스트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Bekker의 주장에 부합하는 외부지향적인 윤리규정의 정신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전문에는 이러한 윤리규정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윤리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어야 한다. 외국의 협회들은 공통적으로 '아키비스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었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전문에서는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 교

육을 실시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시에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밝혀서 윤리규정이 명문으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는데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 기록정보 관리에 관한 윤리규정 제안

기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윤리규정은 아키비스트가 보존기록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기록정보관리에 관련한 윤리규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5개의 협회 중에서 2개 이상 협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용을 필수요소로 정하고 어떤 내용이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기록정보의 관리에 관련되는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필수요소를 추출하면 〈표 3〉과 같다.

이관 및 수집에 관련되어 필수요소로 꼭 다루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집시 다른 기관이나 자신이 일하는 보존소의 상급자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다. 둘째, 기록의 무결성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때는 수집, 이관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항이고, 셋째, 기록물을 이관하는 공무원이나 기록물 소유자와 협의할 시

〈표 3〉 기록정보 관리에 관한 윤리규정의 필수요소

구분	윤리규정 필수내용요소
이관/수집	수집 시 경쟁하지 말 것
	기록의 무결성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때는 수집, 이관을 금지
	이관하는 공무원이나 기록물 소유자와 협의시 재정적 준비, 저작권, 접근조건, 기증, 이관에 대한 허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출처가 불분명한 기록물의 수집 시 출처를 밝히도록 해야 함
평가	기록보존기관의 행정적요구와 수집정책에 따라 기록물을 공정하게 평가 (전문적인 판단력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신념, 견해를 배제)
	구입이나 세금혜택, 기증을 위해 정당한 시장가격에 따라 기록물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해야 함
선별/처분	처분을 위해 상급자, 기증자에게 연락해야 함
정리	정리시 기록물의 RG, 시리즈, 컬렉션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화와 구조를 존중해야 함
보존/보호	소장하는 보존기록물이 무결성을 갖도록 보호하여 해야 함
	무결성을 유지하는 책무를 수행시 고용주, 기록소유자, 이용자 각각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함
	보존기록물이 과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기록의 진본성을 보호할 것
	기록물이 계속적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보호해야 함(마멸, 물리적훼손, 절도로부터 기록물을 보호)
	보존기록물의 절도용의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일에 대해 사법기관과 다른 아키비스트들에게 협조
	적절한 보존소에 보존되도록 협조
기록관리 기준준수	기록물 처리 행위에 대해 기록해야하며 기준을 문서화해야 함
	승인된 원칙과 관행에 따라 행동
	출처보존의 원칙과 생산관계를 지켜 보존해야 함
	기관의 지시(목적)에 따라 평가, 선정, 수집

재정적준비, 저작권, 접근조건, 기증이나 이관에 대한 허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넷째는 출처가 불분명한 기록물의 수집시 출처를 밝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기록물의 평가에 관련되는 필수요소에는 기록보존기관의 행정적요구와 수집정책에 따라 기록물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사항과 구입이나 세금혜택, 기증을 위해 정당한 시장가격에 따라 기록물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물의 처분에 관련하여서는 기록물의 처

분을 위해 보존소의 상급자, 기증자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 다루어져야한다.

기록물의 보존과 보호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요소는 특히 기록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간다. 먼저 기록의 무결성¹³⁾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아키비스트가 소장하는 보존기록물이 무결성을 갖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사항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책무를 수행시에 고용주, 기록소유자, 이용자 각각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항이 필요하다. 기록의 무결성은 기록이 생산된 이후 물리적이거나 지적인 요소의 잠재적 손실과 관련되는 개념으

13) 무결성은 기록이 완벽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ISO 15489-1: 7.2.4).

로 특히 전자환경에서 기록의 무결성은 매체의 취약성, 기술의 노후화, 시스템의 특이성 등이 무결성에 영향을 미친다. 전자기록이 일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전달하도록 의도된 메시지가 변하지 않았다면 무결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설문원 2005). 또한 보존기록물이 과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사항이 필요하다.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은폐, 조작하려는 모든 외부의 압력과 지시, 자기 자신의 욕구 등에 저항하여 기록물이 온전한 상태로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보존에 관하여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할 윤리규정의 하나는 기록의 진본성¹⁴⁾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진본성은 기록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서 기록의 진본성을 확인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록관리 환경과 전자기록관리 환경이 각각 다르다. 진본 전자기록물의 영구보존에 대한 'InterPARES 프로젝트'에서 정의하는 진본기록물은 애초의 취지와 일치하고 함부로 고치거나 변조되지 않은 기록을 말한다. InterPARES 프로젝트에서 진본기록은 정체성과 무결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¹⁵⁾ 아키비스트는 전자기록물의 보존가치가 평가, 정리, 기술, 보존처리, 활용 등의 기록물 보존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전자기록물이 상이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상호간에 전송될 때와 전자기록물을 저장, 처리, 전달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 진본성을 위협받는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진본성의 보호는 전자기록환경에서 아키비스트에게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며 윤리규정에서 진본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수내용요소 이외에도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록물이 계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사항이 필요하다. 화재, 대중매체, 과도한 열, 습기, 건조상태, 먼지, 해충 기록물의 손상에 대한 가장 공통적인 원인에 관하여 빈틈없도록 해야 하고 절대로부터도 기록물을 보호해야 한다.

기록관리 기준준수에 관련하여 윤리규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첫째, 기록물 처리 행위에 대해 기록해야 하며 기록물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아키비스트는 기록보존 결정과 작업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 기록보존 업무의 경험과 교훈을 축적해야 하며 기록물 처리의 증거를 남겨야 한다. ICA에서는 이 조항과 관련한 주석에서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의 전 생명주기에 걸친 올바른 기록관리 방식을 지켜야 하며, 새로운 기록형태와 새로운 정보관리 방식

- 14) Duranti는 진본성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법적개념으로의 진본문서는 생산중이나 생산이후의 관리에 의해 문서의 진실성이 보장되는 공식적 표현물이며 따라서 입증 능력을 갖춘문서로 보고, 고문서학에서의 진본문서는 텍스트에 지시된 시간과 장소의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문서를 생산한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이름 서명이 있는 문서를 말하고, 역사적 진본문서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나 진실인 정보를 입증하는 문서로 보았다(설문원, 2005. "기록의 품질기준분석-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11호, p.60.).
- 15) 여기서의 정체성은 기록물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 즉, 기록을 고유하게 특징짓고 그것을 다른 기록과 구별하는 기록의 특성을 의미한다(남성운, 윤대현, 2005.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에 대한 제언." 「기록관리보존」, 제10호, pp.5-6.; 설문원, 2005. "기록의 품질기준분석-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11호, p.62.).

을 도입할 때는 기록물 생산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키비스트가 기록물생산자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기록물 생산자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기록물이 초기 생산단계부터 파악이 되고 등록이 되고 보존되어야 기록물을 제대로 선별해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기록물의 경우가 이렇다. ICA의 전자기록관리위원회에서는 컴퓨터공학 분야의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 이론을 도입하여, 전자기록물의 라이프사이클을 '설계(Conception) 단계-생산(Creation) 단계-관리(Maintenance) 단계'로 정립하고 있다.¹⁶⁾ 따라서 영구보존단계의 관리는 생산 행위에 대한 증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생산자와 아키비스트간의 긴밀한 협력체제구축이 필수적이다. 생산단계에서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의 전자기록물 관리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필수요소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해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관리 기준준수에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두 번째 필수사항은 승인된 기록보존원칙과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아키비스트는 기록보존원칙에 따라 그들의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보존기록물을 소장하기 위해 기록물을 선별하고 수집하는 일, 보존기록물의 안전한 보호 장치 설비와 보존처리 및 보존을 제공하는 일, 그 기록정보를 사용 가능케 하기 위해 정리, 기술, 편찬하는 일들을 기록보존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기록관리 기준준수에 관한 세 번째 사항은 출처보존의 원칙과 생산관계를 지켜 보존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이것이 바로 승인된 기록보존 원칙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전자기록환경에서는 조직적 실체로서의 출처대신 '기능적 출처' 개념이 등장하는 등 출처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일어나고 있다(이승억 2002). 하지만 승인된 원칙과 관행에 따라 행동해야한다는 윤리규정을 따를 때 전자기록환경에서 출처에 관련되는 문제는 승인된 원칙으로 인정될 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관리 기준준수에 관한 네 번째 사항은 기관의 지시와 목적에 따라서 기록물을 평가,

16) 설계단계는 전자기록물을 생산하는 전산시스템의 설계 및 기획, 개발, 설치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현행 업무에 필요한 정보 및 생산, 유통과정을 분석함과 아울러, 전산시스템의 설계, 개발 및 전산 관련기술을 선택, 도입하게 되며 전산시스템에 기록물관리에 대한 필수 기능을 반영시킴으로써 체계적인 전자기록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자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구조-맥락 관련 메타데이터를 포착할 뿐만 아니라 해당 처리행위에 대한 증거성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생산 이전단계부터 진본성, 완전성, 무결성을 지닌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반영시킴으로서 기록물 생산 이후 영구보존에 필수인 제반 사항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단계는 설계단계에서 수립한 전자기록관리체제를 토대로 실제 전자기록물을 생산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진본성, 무결성, 완전성을 지닌 실제 전자기록물을 생산, 캡처하게 된다. 관리단계는 전자기록물의 생산 이후 전자기록물과 관련된 기술적 제반조치 수행 및 관리 그리고 보존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생산 이후 업무부서의 현용시점으로부터 전문관리기관의 영구보존에 이르는 시점까지 전자기록물과 관련된 제반 관리조치를 시행하게 되며, 생산부서에서의 현용단계 동안 전자기록물에 취해진 관리조치는 이후 준현용 및 비현용 시점의 전자기록물관리에 영향을 준다(남성운, 윤대현, 2005,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에 대한 제언." 「기록관리보존」, 제10호, pp.12-13.).

선정, 수집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4.3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윤리규정 제언

정보서비스의 성공은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윤리적 차원은 상당히 중요하다(Pugh 1992). 아키비스트는 기록이 되도록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록생산자의 적법한 요구와 기록에 나타난 제3자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윤리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에 관해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윤리규정의 요소를 추출해보면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록정보를 접근, 이용하는데 관련되는 윤리의 필수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목록활용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아키비스트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검색하게 해 주기 위한 유용한 탐색도구(finding aids)를 생성해야 한다. 즉, 아키비스트는 전체

소장 기록물에 대해 일반 검색목록과 특정분야의 검색목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록물이 최대한 이용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기록물을 최대한 이용가능 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록의 특성 가운데 가용성¹⁷⁾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생각된다. 특히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환경에서 전자기록의 위치를 찾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이그레이션이나 에뮬레이션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설문원 2005).

셋째, 이용자에게 기록물에 부과된 이용제한 조치를 공평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이 제한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해주어야 하는데 이때는 이용자들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차별이나 우대 없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항이 필요하다. 아키비스트는 모든 이용자들의 평등한 접근을 주장함과 더불어 모든 이용자들에게 평등한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모든

<표 4> 기록정보 서비스에 관한 윤리규정 필수요소

구분	윤리규정 필수 내용요소
접근/ 이용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목록활용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
	기록물이 최대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이용자에게 기록물에 부과된 이용제한 조치를 공평하게 설명해주어야 함
	차별이나 우대없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공평한 서비스제공)
프라이버시 존중	기록물 생산자, 기록물 내용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보호
	기관의 보안절차에 따라 수집된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사적인 권리를 존중
	이용자의 연구 활동에 관하여 누설하지 말 것
	유사한 연구를 하는 이용자들에게 연구의 중복을 막기 위해 동의를 받아 알림

17) 가용성 있는 기록은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으며 해석할 수 있는 기록이다(ISO 15489-1: 7.2.5).

이용을 공평하게 처리해야지 특정인을 다른 사람과 달리 우대해서 어떤 연구자에게 접근하도록 한 기록을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¹⁸⁾에 관련한 윤리규정의 필수요소에는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기록물 생산자, 기록물 내용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사항이다. 일반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정보는 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기록된다. 그런 종류의 기록에는 인구조사일정표, 병역기록, 정부사무기록등이 있다. 특수한 종류 가운데는 범죄와 위험인물의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도 해당한다(Schellenberg 1975).

둘째, 기관의 보안절차에 따라 수집된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사적인 권리를 존중해야한다는 사항이 필요하다.

셋째, 이용자의 연구 활동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항이다. 아키비스트는 소장기록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널리 알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사연구를 위해 기록을 이용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다른 연구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넷째, 유사한 연구를 하는 이용자들이 있을 때, 연구의 중복을 막기 위해 중복사실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면, 동의를 받아 알려야 한다. 유사한 주제의 연구자들에 관한 정보는 연구자로 하여금 더 효과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정보에 대한 어떤 문의가 있으면 이전 연구자의 동의 하에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4.4 전문직 실천 및 조직에 관한 윤리규정 제언

아키비스트는 이용자에 대한 임무뿐 아니라 전문직 및 소속기관의 일원으로서의 임무도 지닌다. 부당한 이익금지, 전문성추구, 법률관련사항, 전문직적 임무수행 4가지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키비스트의 전문직 실천 및 조직에 관련한 윤리규정의 필수요소를 추출해보면 <표 5>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부당이익금지에 관해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첫째,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에 특별히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이다. 둘째, 기관이 소장하는 기록물을 개인적 연구와 출판에 위해 이용할 수 있지만 동일한 소장 기록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구를 수행했을 때에만 그러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항이다. 아키비스트가 소속 기록관리기관에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한다면, 심각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아키비스트는 자신의 저작출판을 위해 다른 연구자에게 그 기록을 보여주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이상민 2003). 따라서 아키비스트가 개인적인 연구와 출판을 위해서

18)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살아있는 개인이 간섭받지 않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신만이 간직할 수 있으며, 알려지기를 원하는 정보를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프라이버시법에 의해 당사자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어떠한 사적정보도 보호되며 여기에는 좋은 평판까지 포함된다(Mary Jo Pugh, 1992, *Providing Reference Service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설문원 역, 2004, 「기록정보서비스」, p.110).

〈표 5〉 전문직 실천 및 조직에 관한 윤리규정 필수요소

구분	윤리규정 필수 내용요소
부당한 이익금지	기록물에 특별히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됨
	기관이 소장하는 기록물을 개인적 연구와 출판을 위해 이용할 수 있지만 동일한 소장 기록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구를 수행했을 때에만 그러한 이용이 가능 (같은 기록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고용주에게 알림)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의 처리 중에 알게 된 정보를 폭로하거나 사용금지
	자신의 사적인 연구와 출판에 관한 관심이 소속기관 본연의 전문적인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 함
법률	아키비스트는 법률에 따를 것
전문직적 의무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무책임한 비난을 피해야 하며, 불평이 있을 시 검토할 것
전문성 추구	전문지식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전문지식 생산에 공헌
	전문직 동료나 관련 전문직 종사자와의 충돌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하여 협력을 증진해야 함
	타직종 전문가와 협력(법률제정자, 정책수립자와 지식공유)

자신이 소속한 기록관리기관의 소장기록물을 이용한다면 같은 기록을 이용하는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의 처리 중에 알게 된 정보를 폭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다. 즉,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에 대한 업무로부터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하여야 함을 규정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넷째, 자신의 사적인 연구와 출판에 관한 관심이 소속기관 본연의 전문적인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적 연구와 출판에 집중하여 전문직적 책무의 수행을 저해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률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아키비스트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아키비스트는 기관의 기록물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확인해야 한다(Pugh 1992).

전문직적 의무수행과 관련한 윤리는 첫째,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아키비스트는 인종, 성별, 정치적 활동, 종교에 상관없이 차별이 없

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전문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무책임한 비난을 피해야 하며 불평이 있을시 검토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아키비스트는 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수행에 간섭하는 것을 피해야하며 전문적인 기관이나 개인 또는 기관에 관련된 전문적, 윤리적 행위에 대한 불평을 검토할 것을 윤리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전문성 추구에 관련한 윤리를 살펴보면 첫째, 전문지식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전문지식 생산에 공헌해야 한다는 사항이 필요하다. 아키비스트는 자신이 가진 기록보존 지식을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쇄신시키고 탁월한 전문성을 추구해야하는 것이다. 둘째, 전문직 동료나 관련 전문직 종사자와의 충돌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하여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아키비스트는 전문가 동료들과의 갈등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기록보존의 표준과 윤리를 고수하도록 함으로써 난관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타 직종 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그들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기록보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결정하고 명확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법률제정자와 정책 수립자와 협력하는 등 타 분야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 결론

아키비스트는 보존기록물의 수집, 평가, 관리, 보존, 이용을 전담하는 전문가이다. 전문가에게는 반드시 윤리가 필요하고 그 윤리의 틀을 규정해 줄 수 있는 윤리규정이 필요하다. 윤리규정은 전문가들에게 윤리적 이슈뿐만 아니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전문직을 보호하기도 한다. 그래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윤리적 결정을 도와왔다.

아키비스트는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아키비스트의 활동이 활발한 외국에서는 아키비스트 협회를 통하여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윤리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키비스트의 윤리규정이 없는 실정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아키비스트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아키비스트 협회 5개를 선정하여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기록관리 환경도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개 협회의 윤리규정을 비교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이들 협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윤리규정의 구성에 필요한 필수요소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전자기록환경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아키비스트의 윤리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항들만 갖고 확립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국의 아키비스트 전문협회 가운데에는 윤리규정의 제정을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개정작업을 하는 협회들도 있었다. 윤리규정이 한번 제정된 것으로 끝난다면 기록환경의 변화에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없을 것이고 실무에서 일하는 아키비스트들에게도 점점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들이 그들의 업무환경에서 윤리문화를 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기록환경에 맞도록 윤리규정의 개정이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키비스트가 항상 윤리적 측면에서 고민하고 노력할 때, 윤리문화가 바르게 형성되고 아키비스트의 윤리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건홍. 2003. 「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역사비평사.

교양윤리교재연구회. 1996. 「현대사회와 윤리」. 서울: 세종출판사.

- 권용진 2004. 「의사윤리규약 내용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
- 김상배 2002. “전문직업 활동의 윤리적 기반.” 「인문과학」, 9: 73-87.
- 김상호 1999. 「기록보존론」. 서울: 아세이문화사.
- 김혜선 1994. 「사서직 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김혜경 외 2004.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 방향 제안.” 「정보관리학회지」, 21(4): 329-352.
- 명대정 2000. 「상담의 전문직화: 주요 전문직의 선례분석을 기초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문현상 2000. 「인간윤리」. 서울: 동문사.
- 설문원 2005. “기록의 품질기준분석-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1: 41-89.
- 손봉호 2003. “전문직윤리의 특성과 일반윤리와의 관계.” 「인문과학」, 9: 1-18.
- 오항녕 2003.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윤리.” 「기록학연구」, 7: 109-128.
- 우수영 2005.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질의/응답 서비스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관리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윤대현 외 2005.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에 대한 제언.” 「기록관리보존」, 10: 1-32.
- 이상민 1999. “ICA 아키비스트 윤리규약.” 「기록보존」, 12: 263-276.
- 이상민 2003. “아키비스트 윤리규약과 논평.” 「기록학연구」, 7: 199-210.
- 이순자 1992. “정보관리와 전문직윤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2: 1-27.
- 이승억 2002.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에 관한 재검토.” 「기록학연구」, 6: 41-72.
- 이응봉 1997. “정보전문직의 역할과 사회적 환경.” 「문헌정보학논집」, 7: 75-99.
- 임희섭 1981. “전문직의 윤리의식.” 「산업사회의 직업윤리」,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임희섭 1990. “전문직의 직업윤리가 절실하다.” 「한국논단」, 11: 110-117.
- 최정태 외 2005. 「기록관리학사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 최정태 2001. 「기록학개론」. 서울: 아세이문화사.
- O’toole, James M. 1990. *Understanding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이승억 역 2004. 「기록의 이해」. 서울: 진리탐구).
- Pugh, Mary Jo. 1992. *Providing Reference Service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설문원 역 2004. 「기록정보서비스」. 서울: 진리탐구).
- Schellenberg, Theodore R. 1975. *Modern Archives : Principles and Techniques*. SAA. (이원영 역 2002. 「현대기록학개론」. 서울: 진리탐구).
- Bekker, Johan. 1976. *Professional Ethics and Its Application to Librarianship*. Ph.D.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Bradsher, James Gregory. 1981.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ok, Michael. 2006. "Professional Ethics and Practice i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a Human Rights Contex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7(1): 1-15.
- DeGeorge, Richard T. 1990. *Business ethics*. 3rd ed., New York: Macmillan.
- Dingwall, Glenn. 2004. "Trusting archivists : the role archival ethics codes in establishing public faith." *American Archivist*, 67(1): 11-30.
- Horn, David E. 1998. "The Development of Ethics in Archival Practice." *American Archivist*, 52(Winter): 64-71.
- Sillitoe, Paul J. 1998. "Privacy in a Public Place: managing public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d by archives servic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19(1): 5-15.
- Usherwood, Bob. "Towards a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slib Proceedings*, 33(6): 233-242.
- 【관련사이트 : 외국 각 협회 윤리규정】**
- 미국 SAA 윤리규정 :
〈http://www.archivists.org/governance/handbook/app_ethics.asp〉
- 캐나다 ACA 윤리규정 :
〈<http://archivists.ca/about/ethics.aspx>〉
- 호주 ASA 윤리규정 :
〈<http://www.archivists.org.au/about/ethics.html>〉
- 영국 SA 윤리규정 :
〈<http://www.archives.org.uk/membership.html>〉
- ICA 윤리규정 :
〈<http://www.ica.org>〉